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 - 91
----------	---------

제출년월일 : 2013.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규정을 정비하고,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회계로의 전출 등에 필요한 특별회계 세출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세입근거 항목 추가(안 제3조)

-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나. 특별회계 세출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 일반회계로 전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21조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주차장법」 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및 제32조(이행강제금)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3. 10. 4. ~ 10. 24 (제출의견 없음)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다.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라. 입법예고문 변동내역

-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및 일반회계로의 전출 제외 규정에 제3조제7호 (서울특별시의 보조금)를 추가

마. 2013년 제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3.11.5)

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7호, 제9호 및 제12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2. 일반회계로의 전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p> <p>1. ~ 11. (생 략)</p> <p>12. 삭제</p> <p>13. · 14. (생 략)</p> <p>제4조(세출) (생 략)</p> <p><u><신 설></u></p>	<p>제3조(세입)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u>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u></p> <p>13. · 14. (현행과 같음)</p> <p>제4조(세출)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7호, 제9호 및 제12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u></p> <p>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위탁</p> <p>2. 일반회계로의 전출</p>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안 제4조제2항(신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7호, 제9호 및 제12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2. 일반회계로의 전출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소계(a)						
세출	○ 전출금	17,000,000					17,000,000
	소계(b)	17,000,000					17,000,000
□ 총 비용(a-b)		△17,000,000					△17,000,000

4. 재원조달 방안 (해당없음)

5. 기타의견

-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것으로 세입은 발생하지 않음
- 향후 세입 대비 세출의 현황을 파악 후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출금을 결정코자함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전미숙
연락처	02-3153-9652